

취업 활성화를 위한

산 · 학 협력 협약서

지티에스국제물류(주)와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와는 지역 사회 중심의 교육 · 봉사 및 학술연구의 발전과 정보의 효율적인 교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서는 아래 기술된 분야에 있어서 양 기관 사이의 협력 관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 범위) 지티에스국제물류(주)와 학교는 지역사회 교육 제반 영역에 대해 상호 간의 관심과 필요에 근거하여 인적 · 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며, 본 협약서에 의한 각종 사업은 상호 협의 하에 계속 발전시킨다.

제3조 (협력 분야) 지티에스국제물류(주)와 학교는 아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지티에스국제물류(주)의 협력 사항

- 가.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
- 나.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
- 다. 우수인력 현장적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협조
- 라. 견학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

2.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의 협력 사항

- 가. 우수 인력 지원
- 나.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
- 다. 학교 시설 사용 협조

제4조 (효력 및 협력기간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지티에스국제물류(주)와 학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한다. 단 종료일 1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5조 (비밀유지)

- ① 지티에스국제물류(주)와 학교는 이 협약서에 따라 상대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, 업무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일체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,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상대 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지티에스국제물류(주)와 학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,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타 용도 이용금지에 대한 교육 및 지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6조 (협약서의 변경 및 해지) 지티에스국제물류(주)와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협력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협약서가 해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단, 이 협약서가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종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.

1. 지티에스국제물류(주)와 학교가 협약서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에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
제7조 (기타)

- 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양 기관은 이 협약서에 날인하고,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- ③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한다.

2024년 1월 4일



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
116번길 12, 501호(소진빌딩)
지티에스국제물류(주)
대표 이 광 수

서명

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진남로 524
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
교장 오창보

서명